

※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트리본 센텀" 홈페이지(www.trivn-dooosan-centum.com)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26(월)	2026.10.27(화)	2026.10.28(수)	2026.11.04(수)	2026.11.07(토)~ 2026.11.13(금)	2026.11.17(화)~ 2026.11.19(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보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보주택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트리본 센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태미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보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절벽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공급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33942호(2026. 10. 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9층 9개동 총 852세대 일반보양
[특별공급 405세대(기관추진 70세대, 다자녀1가구 86세대, 신혼부부 104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49세대, 신생아 70세대) 포함] 및 무대복리사설
■ 입주자격 : 2031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형명 (현행명/기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13	01	75.9453	75	75.9453	21.1728	97.1181	63.4418	160.5599	35.6859	79	8	8	12	2	6	8	44	35	4	
	02	84.8860	84A	84.8860	23.2083	108.0943	70.9107	179.0050	39.8871	433	43	43	65	13	30	43	237	196	18	
	03	84.9724	84B	84.9724	24.8866	109.8590	70.9828	180.8418	39.9277	156	16	16	23	5	11	16	87	69	6	
	04	84.7773	84C	84.7773	24.5795	109.3568	70.8198	180.1766	39.8360	28	3	3	4	1	2	3	16	12	1	
	05	114.9763	114	114.9763	29.7972	144.7735	96.0470	240.8205	54.0262	156		16			5			21	135	6
	합계										852	70	86	104	26	49	70	405	447	35

[단위:㎡ / 세대]

III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유수 제한 없음
	신생아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전처분한 경우 제외)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해당청제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한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영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의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의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자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월(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월(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월(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대상인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후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청약가능함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소유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청약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비고	■ 1순위 가정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정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정제 당첨 시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사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정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 공급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 /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리·단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7.06.19	2027.12.19	2028.06.19	2028.12.19	2029.06.19	2029.12.19		임주지정일			
75	37	106동 107동	3~5층	6	265,376,800	380,623,200		646,000,000	10,000,000	22,3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226,100,000				
			6~10층	10	268,088,080	384,511,920		652,600,000	10,000,000	22,63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228,410,000				
			11~20층	20	270,799,360	388,400,640		659,200,000	10,000,000	22,96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230,720,000				
			21~25층	1	277,536,480	398,063,520		675,600,000	10,000,000	23,78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236,460,000				
			2층	2	265,253,560	380,446,440		645,700,000	10,000,000	22,285,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225,995,000				
	42	109동	3~5층	6	270,799,360	388,400,640		659,200,000	10,000,000	22,96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230,720,000				
			6~10층	10	273,551,720	392,348,280		665,900,000	10,000,000	23,295,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233,065,000				
			11~20층	20	276,304,080	396,295,920		672,600,000	10,000,000	23,63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235,410,000				
			21~25층	4	283,205,520	406,194,480		689,400,000	10,000,000	24,47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241,290,000				
			2층	11	295,570,600	423,929,400		719,500,000	10,000,000	25,975,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251,825,000				
264	101동 102동 103동 104동	3~5층	33	301,732,600	432,767,400		734,500,000	10,000,000	26,725,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257,075,000					
		6~10층	55	304,813,600	437,186,400		742,000,000	10,000,000	27,1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59,700,000					
		11~20층	110	307,894,600	441,605,400		749,500,000	10,000,000	27,475,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262,325,000					
		21~25층	51	315,766,560	452,623,440		768,200,000	10,000,000	28,41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268,870,000					
		2층	4	317,137,600	454,862,400		772,000,000	10,000,000	2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2층	1	298,528,360	428,171,640		726,700,000	10,000,000	26,335,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254,345,000					
		3~5층	6	304,772,520	437,127,480		741,900,000	10,000,000	27,095,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259,665,000					
		6~10층	10	307,853,520	441,546,480		749,400,000	10,000,000	27,470,000	74,940,000	74,940,000	74,940,000	74,940,000	74,940,000	74,940,000	262,290,000					
84A	55	107동	11~20층	20	310,975,600	446,024,400		757,000,000	10,000,000	27,85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64,940,000				
			21~25층	10	318,739,720	457,160,280		775,900,000	10,000,000	28,795,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271,565,000				
			2층	8	320,300,760	459,399,240		779,700,000	10,000,000	28,985,000	77,970,000	77,970,000	77,970,000	77,970,000	77,970,000	77,970,000	272,895,000				
			3~5층	3	289,665,080	415,444,920		705,100,000	10,000,000	25,255,000	70,510,000	70,510,000	70,510,000	70,510,000	70,510,000	70,510,000	246,765,000				
			2층	15	295,689,840	424,106,160		719,800,000	10,000,000	25,99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251,930,000				
	114	108동	6~10층	25	298,733,760	428,466,240		727,200,000	10,000,000	26,360,000	72,720,000	72,720,000	72,720,000	72,720,000	72,720,000	72,720,000	254,520,000				
			11~20층	50	301,732,600	432,767,400		734,500,000	10,000,000	26,725,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257,075,000				
			21~25층	19	309,291,320	443,608,680		752,900,000	10,000,000	27,645,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263,515,000				
			2층	2	310,707,020	445,729,800		756,500,000	10,000,000	27,825,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264,775,000				
			3~5층	6	290,723,160	416,976,840		707,700,000	10,000,000	25,385,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247,695,000				
84B	156	106동 107동	2층	18	296,803,000	425,697,000		722,500,000	10,000,000	26,125,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258,875,000				
			3~5층	30	299,801,840	429,996,160		729,800,000	10,000,000	26,49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255,430,000				
			6~10층	60	302,841,760	434,356,240		757,200,000	10,000,000	26,86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258,020,000				
			11~20층	26	310,400,480	445,199,520		755,600,000	10,000,000	27,18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64,460,000				
			26~29층	16	319,920,440	447,319,560		759,300,000	10,000,000	27,965,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265,765,000				
84C	28	102동	2층	1	292,777,160	419,922,840		712,700,000	10,000,000	25,635,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249,445,000				
			3~5층	3	298,875,000	428,634,000		727,500,000	10,000,000	26,375,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254,625,000				
			6~10층	5	301,896,920	433,003,080		734,500,000	10,000,000	26,745,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257,215,000				
			11~20층	10	304,972,920	437,422,080		742,400,000	10,000,000	27,12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259,840,000				
			21~25층	5	312,577,720	448,322,280		760,900,000	10,000,000	28,045,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266,315,000				
	56	102동	2~5층	4	314,097,680	450,502,32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2층	2	370,405,257	526,086,743	52,608,613	949,100,000	10,000,000	37,455,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332,185,000				
			3~5층	6	378,093,576	537,005,840	53,700,584	968,800,000	10,000,000	38,345,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338,080,000				
			6~10층	10	381,951,249	542,993,410	54,299,341	978,700,000	10,000,000	38,925,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342,545,000				
			11~20층	20	385,820,922	547,980,980	54,798,098	988,600,000	10,000,000	39,43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346,010,000				
114	28	102동	21~25층	10	395,402,591	561,672,190	56,167,219	1,013,300,000	10,000,000	40,665,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354,655,000				
			2층	8	397,491,941	564,443,959	56,444,399	1,018,300,000	10,000,000	40,915,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356,405,000				
			3~5층	4	374,112,822	531,351,980	53,135,198	958,600,000	10,000,000	37,930,000	95,860,000	95,860,000	95,860,000	95,860,000	95,860,000	95,860,000	335,510,000				
			2층	12	381,879,195	542,382,560	54,238,255	978,500,000	10,000,000	38,925,000	97,850,000	97,850,000	97,850,000	97,850,000	97,850,000	97,850,000	342,475,000				
			6~10층	20	385,781,895	547,925,550	54,792,555	985,500,000	10,000,000	39,425,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345,975,000				
100	106동	11~20층	40	389,684,495	553,468,505	55,346,855	998,500,000	10,000,000	39,925,000	99,850,000	99,850,000	99,850,000	99,850,000	99,850,000	99,850,000	347,475,000					
		21~25층	16	399,441,345	567,326,050	56,732,055	1,023,500,000	10,000,000	41,175,000	102,350,000	102,350,000	102,350,000	102,350,000	102,350,000	102,350,000	358,225,000					
		2층	8	401,392,695	570,097,550	57,009,755	1,028,500,000	10,000,000	41,425,000	102,850,000	102,850,000	102,850,000	102,850,000	102,850,000	102,850,000	359,975,000					
		3~5층	10	404,392,695	573,097,550	57,309,755	1,033,500,000	10,000,000	41,675,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361,725,000					
		2층	10	404,392,695	573,097,550	57,309,755	1,033,500,000	10,000,000	41,675,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361,725,000					

※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트리본 센텀” 홈페이지(www.trivn-dooosan-centum.com)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6.(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등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26.(월)	2026.10.27.(화)	2026.10.28.(수)	2026.11.05.(목)	2026.11.07.(토)~ 2026.11.13.(금)	2026.11.17.(화)~ 2026.11.19.(목)
방법	(PC·모바일) 청약호출(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PC·모바일) 청약호출(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호출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트리본 센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절벽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식,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식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공급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33946호(2026. 10. 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10-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9개동 총 792세대 일반분양
[특별공급 370세대(기관추천 63세대, 다자녀가구 79세대, 신혼부부 95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생애최초 45세대, 신생아 6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1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층)	악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배별 대상자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14	01	75.9453	75	75.9453	20.9058	96.8511	62.5539	159.4050	35.5731	65	7	7	10	2	5	7	38	27	3
	02	84.8860	84A	84.8860	22.9099	107.7959	69.9181	177.7140	39.7610	385	39	39	58	12	27	39	214	171	16
	03	84.9724	84B	84.9724	24.5878	109.5602	69.9892	179.5494	39.8015	154	15	15	23	5	11	15	84	70	6
	04	84.7773	84C	84.7773	24.2814	109.0587	69.8286	178.8873	39.7101	24	2	2	4	1	2	2	13	11	1
	05	114.9763	114	114.9763	29.3930	144.3693	94.7028	239.0721	53.8555	164	-	16	-	5	-	2	21	143	6
				합계							792	63	79	95	25	45	63	370	422

III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신생아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전처분한 경우에도 한함)	
제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당첨제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 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청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은 배제할 수 있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항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의 차이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와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의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작적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의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작적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인은 부작적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인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전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작적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인은 부작적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인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전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작적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인은 부작적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인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인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전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작적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처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청각장애 소우자(다소재생 부지소재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식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작적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식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 공급 금액 및 납부일정

악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자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7.06.19	2027.12.19	2028.06.19	2028.12.19	2029.06.19	2029.12.19	
75	65	206동 207동	2층	2	262,993,610	382,706,390		645,700,000	10,000,000	22,285,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64,570,000	225,995,000
			3~5층	9	268,492,160	390,707,840		659,200,000	10,000,000	22,96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230,720,000
			6~10층	15	271,221,070	394,678,930		665,900,000	10,000,000	23,295,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66,590,000	233,065,000
			11~20층	30	273,949,890	398,650,020		672,600,000	10,000,000	23,63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67,260,000	235,410,000
			21~25층	5	280,792,620	408,607,380		689,400,000	10,000,000	24,47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241,290,000
			26~29층	4	282,177,440	410,622,560		692,800,000	10,000,000	24,64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242,480,000	
84A	385	201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8동 209동	2층	15	293,052,350	426,447,650		719,500,000	10,000,000	25,975,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71,950,000	251,825,000
			3~5층	48	299,161,850	435,338,150		734,500,000	10,000,000	26,725,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257,075,000
			6~10층	80	302,216,600	439,783,400		742,000,000	10,000,000	27,1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59,700,000
			11~20층	160	305,271,350	444,228,650		749,500,000	10,000,000	27,475,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262,325,000
			21~25층	58	312,887,860	455,312,140		768,200,000	10,000,000	28,41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268,870,000
			26~29층	24	314,435,600	457,564,400		772,000,000	10,000,000	2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84B	154	201동 206동 208동	2층	6	288,246,210	419,453,790		707,700,000	10,000,000	25,385,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70,770,000	247,695,000
			3~5층	18	294,274,250	428,225,750		722,500,000	10,000,000	26,125,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252,875,000
			6~10층	30	297,247,540	432,552,460		729,800,000	10,000,000	26,49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72,980,000	255,430,000
			11~20층	60	302,261,560	436,938,440		737,200,000	10,000,000	26,86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258,020,000
			21~25층	28	307,755,880	447,844,120		755,600,000	10,000,000	27,78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64,460,000
			26~29층	12	309,262,890	450,037,110		759,300,000	10,000,000	27,965,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75,930,000	265,755,000	
84C	24	204동	2층	1	290,282,710	422,417,290		712,700,000	10,000,000	25,635,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249,445,000
			3~5층	3	296,310,750	431,189,250		727,500,000	10,000,000	26,375,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72,750,000	254,625,000
			6~10층	5	299,324,770	435,575,230		734,900,000	10,000,000	26,745,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73,490,000	257,215,000
			11~20층	10	302,379,520	440,020,480		742,400,000	10,000,000	27,12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74,240,000	259,840,000
			21~25층	5	309,914,570	450,985,430		760,900,000	10,000,000	28,045,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263,315,000
114	164	202동 204동	2층	6	367,586,430	526,684,700	526,684,700	949,100,000	10,000,000	37,455,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94,910,000	332,185,000
			3~5층	18	375,216,240	538,621,600	538,621,600	968,800,000	10,000,000	38,44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96,880,000	339,080,000
			6~10층	30	379,050,510	545,135,900	545,135,900	978,700,000	10,000,000	38,935,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97,870,000	342,545,000
			11~20층	60	382,884,780	550,650,220	550,650,220	988,600,000	10,000,000	39,43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98,860,000	346,010,000
			21~25층	30	392,615,090	564,408,100	564,408,100	1,013,300,000	10,000,000	40,665,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101,330,000	354,655,000
			26~29층	20	394,387,590	567,193,100	567,193,100	1,018,300,000	10,000,000	40,915,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101,830,000	356,405,000	